

의안번호	제 7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3월 14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776호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및 지진, 진도 세월호 침몰참사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화된 체험식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에 부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15.4.30)을 거쳐 추진중이던 재난안전 체험관의 사업비 지원이 변경되어 부득이 규모를 축소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 도청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이원화 및 소방본부 3개과 사무실 분산배치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도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분산된 자원의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 변경내용

구분	당초 (안)	변경 (안)
위 치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일원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4년간)	2018년 ~ 2020년 (3년간)
부 지	25,623㎡ (시유지 무상사용)	변동없음
건축규모	10,400㎡ / 4개동	2,900㎡ / 1개동
사 업 비	26,000백만원 (소방교부채 50%, 도비 50%)	12,000백만원 (소방교부채 50%, 도비 50%)
주요시설	재난종합체험관, 위기탈출관, 소방전시관	재난안전체험관

○ 사업내용 : 안전체험관 1동 (3개 체험존, 6개 체험시설)

재난종합체험관	▶ 생활안전	화재, 전기·가스, 시설 체험
	▶ 자연재난	태풍체험, 지진 안전
	▶ 보건안전	기본 응급처치 체험
부대시설	- 오리엔테이션장 등	

※ [공유재산 무상사용 청주시 의회가결\('14.04.17\)](#), [약정 재협약\('16.04.1\)](#)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18. 5. ~ 2020. 9.
- 사업규모 : 부지 3,500㎡, 건축 연면적 2,580㎡(지하1층/지상3층)
- 사 업 비 : 14,500백만원(도비100%)
 - ▶ 부지 2,513백만원, 건축비 5,960백만원, 정보통신이전 5,200백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위탁사업수수료 827백만원
- 주요시설 : 소방본부 3개과(소방행정, 대응예방, 구조구급),
1실(119종합상황실)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3,500	2,513,000				
	건물		5,480	18,787,000				
	기타		정보통신1식	5,200,000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2,900	12,000,000	2020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신축	규모 변경
	기타							
2	토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일원(말레니엄타운 내)	3,500	2,513,000	2018	도 소방본부 통합 청사 부지 매입	충북 개발공사	
	건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일원(말레니엄타운 내)	2,580	6,787,000	2020	도 소방본부 통합 청사 신축		
	기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일원(말레니엄타운 내)	정보통신1식	5,200,000	2020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변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